

#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 미국

### 뉴욕에서 활동하는 지붕자재 및 공사업자들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

뉴욕 지붕자재 제조사의 대표였던 자가 뉴욕 알바니 지역에서의 지붕 건축에 대한 입찰담합과 계약할당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뉴욕 주 델마에 거주하는 Sean Moran씨가 알바니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향후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알바니 지역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지붕자재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사례이다. Moran씨는 1996년부터 2001년 7월까지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지붕자재를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려는 여러 회사들과 담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Moran씨와 담합참가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지붕자재 납품 계약에서 입찰가를 정하기에 앞서 서

로 회합을 하고, 낮은 입찰가를 제출할 자를 협의해서 결정하였으며, 다른 입찰자들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Moran씨와 같이 서면법 제1조를 위반하여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이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 뉴욕지방사무소와 FBI가 함께 수사를 벌였다. 지난 2004년 6월에도 Waterblock사와 Sheetmetal Inc. 및 그 대표들이 입찰담합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05. 4. 1. 연방법무부

### 연방법무부, 켄터키 부동산위원회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연방법무부는 켄터키 부동산위원회(Kentucky Real Estate Commission)를 켄터키 지역의 부동산중개인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제소

했다. 연방법무부는 이 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켄터키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독점금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켄터키 부동산위원회는 켄터키 부동산중개인 및 부동산매매협회로 하여금 고객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한 리베이트나 기타 유인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면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는 부동산중개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중개인들 간에 "이익을 감소" 시켜가면서까지 행하는 "입찰 전쟁"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게 되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연방법무부는 주장했다.

"리베이트나 유인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중개인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중개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켄터키 주의 소비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연방독점금지법은 소비자들을 경쟁제한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비록 주체가 켄터키 부동산산위원회와 같이 주에서 설립한 기관일지라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켄터키 부동산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스테이트 액션 법리(the state action doctrine)에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주 정책에 명확한 사유가 있고 그 행위를 주에서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경우에는 연방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경쟁을 제한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주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건 행위를 감독하지도 않았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주립 기관에 의해 일어나는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연방법무부의 노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켄터키 주에서는 이 정책은 중개인들간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켄터키 주는 특히 켄터키 부동산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격고정, 수수료 설정과 같은 행정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주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켄터키 부동산위원회는 부동산중개인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료 반환을 하거나 또는 무료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열람케 하는 등의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

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경쟁상의 편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는 중개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리베이트나 기타 고객확보를 위한 유인책들을 허용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5. 3. 31. 연방법무부

### FTC, 아미노 수지 제조사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연방거래위원회는 Cytec Industries, Inc.(이하 Cytec)가 벨기에 UCB S.A.의 사업부문에 대해 18억 달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ytec은 UCB사의 아미노 수지 사업부문은 6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한 조사에 따르면, Cytec과 UCB는 수년간에 걸쳐 아미노 수지 시장에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동의명령 없이 이들 간의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 이들 간의 경쟁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경쟁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액상 코팅 및 고무 물질에 대한 접착을 위한 아미노 수지(amino resin)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연방

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Cytec과 UCB는 액상 코팅과 고무 접착 촉진제인 아미노 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만드는 수지는 여러 분야에서 열경화성 표면 코팅제로 사용되는데, 가령 자동차 코팅, 코일 코팅, 통조림 코팅, 가전제품 코팅 등에 이용된다. 아미노 수지는 또한 타이어에도 사용되어, 고무와 철과 같은 다른 물질들을 접착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산업용 액상 코팅 시장 및 고무용 접착 시장에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와 클레이튼법 제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Cytec과 UCB는 이러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품 시장은 이미 상당히 집중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시장집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제안했다. 동의명령에는 Cytec이 주식취득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적 효과를 UCB의 아미노 수지 사업 부문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에 매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되는 사업부문에는 메사추세츠와 독일 두 곳의 제조공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UCB와 Solutia Canada 양사간의 협정을 통해

UCB가 아미노 수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및 독일 소재의 공장에서 아미노 수지 이외의 기타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Cytec은 또한 UCB가 자신의 아미노 수지 사업시 사용하던 특허나 지적재산권도 양도해야 한다.

이 동의명령에는 만일 Cytec이 아미노 사업 부문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매각을 담당할 자를 선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Cytec이 매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자를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의명령에는 완전한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산을 분리하여 유지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유지명령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ytec과 UCB는 비밀 정보를 교환해서도 안 된다.

2005. 3. 1. 연방거래위원회

## 반트러스트국, 새로운 차장 지명

Scott D. Hammond씨가 형사집행담당 차장을 맡는다.

R. Hewitt Pate 반트러스트국장은 금일 Scott D. Hammond씨가 반트러스트국 형사집행담당 차장에 지명되었다는 것을 발표했다. Hammond씨는 2004년 12월에 법무부를 퇴직한 James M. Griffin씨 후임이 된다.

지금까지 형사집행부장을 맡았던 Hammond씨는 반트러스트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형사적 반트러스트 심사 및 소추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게 된다. 형사집행담당차장으로서 그는 형사심사의 개시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권고의 전부를 검토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는 또한 법무부의 기업 및 개인 감면정책 하에 사면 신청의 전부를 검토할 책임도 지게 된다.

Pate국장은 「국제적 형사카르텔의 단속은 반트러스트국의 가장 중요과제이다. 과거 수년간 반트러스트 역사가 최장의 금고형 판결이 5개 내려지고, 가격카르텔을 행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통상에 100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은 형사고발 되었다. Scott는 형사집행 프로그램 성공의 큰 일익을 떠맡아 차장으로서의 리더십 아래 이 성공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Hammond씨는 2000년부터 반트러스트국의 형사집행부장을 역임해왔다. Hammond씨는 Attorney General's Honors Program을 통하여 1988년에 반트러스트국에 들어와 소송제2과에 공판검사(trial attorney)로 배속된 곳에서 광범위한 반트러스트 사건에 관여하였다. 1995년, Hammond씨는 형사집행담당차장의 상급고문으로 임명되어, 형사집행부장이 될 때까지 그 직을

맡았다.

Hammond씨는 1985년에 Chapel Hill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형법학사 학위를, 1988년에 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Marc Siegel씨가 Hammond씨의 후임 반트러스트국 형사집행부장에 취임한다. 2003년부터 Siegel씨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부소장을 역임하였다. Siegel씨는 1986년에 공판검사로서 반트러스트국에 들어왔다.

2005. 2. 2.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 E U

## EU위원회, 소니사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EU 기업결합지침에 근거하여, Sony, Comcast 및 투자자 그룹이 영화제작사인 Metro-Goldwyn-Mayer Inc.(이하 MGM)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또는 그 일부에서 유희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Sony는 미국의 Providence Equity, Texas Pacific Group, DLJ Merchant Banking, Inc. 및 Comcast Studio Investments

Inc. 등과 함께 MGM을 인수할 계획이다. 오디오, 비디오, 통신 및 정보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Sony는 영화, TV 프로그램(영화 포함) 및 가족 오락용 제작물의 제작, 배급 및 라이선싱 사업도 하고 있다. Sony는 영화에서부터 TV 프로그램에 걸쳐 많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Comcast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케이블TV 사업자이다.

MGM은 영화 제작, 구입 및 배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자들에게 비해서 꽤 큰 규모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다. MGM의 주요한 자산으로는 제임스 본드나 핑크팬더와 같은 대형 영화의 소유권 및 배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Sony사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Sony Pictures Entertainment가 MGM의 영화 제작 및 배급 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Sony와 MGM이 활동하는 다양한 관련시장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했다. 25개 회원국에서 제작, 배급, 라이선싱 및 소매 판매와 관련된 대규모 시장들을 조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시키거나 기타 경쟁을 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사의 결합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지위가 영화 방영, TV프로그램(영화 포함) 및 가족 오락(Home Entertainment)에 있어서 경쟁환경을 사실상 변화시키지

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시장들에서는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의 증거들이 존재하며, 대체 공급자들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5. 3. 31. EU위원회

### EU위원회, Honeywell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EU위원회는 EU 기업결합지침에 따라 신고된 Honeywell의 Novar에 대한 주식취득을 이탈리아내 화재경보 사업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결합 역시 EU 역내 또는 그 일부 회원국에서 경쟁을 제한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Honeywell은 미국 회사로서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 제작 및 서비스, 자동차 제작, 전자제품, 물류, 빌딩관리 및 산업관리 시스템 사업 등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이다. Novar는 영국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지능형 빌딩시스템, 보안용 지문인식 서비스 사업 등을 주로 하는 사업자이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Honeywell과 Novar는 화재경보 시스템, 무단침입 방지 및 기타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빌딩통제 시스템 부문에서 그 사업활동 영역이 중복된다.

EU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이탈리아내 화재경보 시스템 시장에서 결합기업이 매우 강력

한 지위를 획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Honeywell은 Novar의 이탈리아내 화재경보 시스템 부문을 매각하겠다고 제안했다. EU위원회도 이 매각조치가 경쟁상의 문제를 상당히 제거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2005. 3. 31. EU위원회

### EU위원회, 항공보험사들의 관행에 대해 개선 요구

EU위원회의 조사에 따라서, 유럽내 선도적인 항공보험사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책으로 무엇보다도 런던에 위치한 핵심 산업 위원회들이 항공보험 정책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거나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 보험업자들은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계속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효과는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후 항공 보험 산업에서 어떤 관행이 행해져 왔는지 여부에 대한 EU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EU조약 제 81조를 위반하여 제한적인 사업관행을 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서에 따르면, 항공 보험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구조는 시장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자들 간의 지나친 공동행위를 막아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보험은 주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항공 운송, 항공기 운항, 제작 및 판매, 공항 운영, 항공 교통 통제 및 지상관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런던국제보험협회(the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 및 로이드협회(the Lloyd's Market Association)는 자신이 구성 보험업자들을 구속하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항공보험 정책에 관한 기본 협정과 약관들은 지금까지는 완전히 보험업자들의 단체에 의해 작성되어 왔다. 그러나 장래에는 소비자들도 현행 약관의 개선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항공보험 약관 그룹은 소비자들이 제시된 약관의 개선방안에 대해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관

규정이나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005. 3. 23. EU위원회

### 유럽사법법원, 유럽위원회의 Tetra Laval과 Sidel의 합병금지결정을 취소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제1심법원은 사법심사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였다.

2001년 10월 유럽위원회는 음료 용지박스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 그룹에 속해 있는 Tetra Laval BV와 음료용 PET 병 생산설비 분야에서 주요 기업인 Sidel SA와의 합병을 금지하였다.<sup>1)</sup>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합병은 Tetra Laval이 종이박스 시장에서 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특성의 민감한 상품(우유, 후르츠쥬스, 비발포성 음료, 차 및 커피음료)의 포장용 PET병으로 변경하려는 고객에 대해 Sidel의 SBM기<sup>2)</sup>를 선택하도록 장려하여, 그

결과 Sidel의 선두적 지위를 지배적 지위로 바꾸었다. 더욱이 동 합병은 종이박스 시장에 있어서 이미 지배적 지위에 있는 Tetra Laval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2002년 1월 두 번째 결정에서 유럽위원회는 효과적인 경쟁조건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양 당사자의 분리를 명령하였다.

Tetra Laval에 의해 제소된 재판에서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의 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25일 판결에 의해 2개의 결정<sup>3)</sup>을 취소하였다.

그 후 유럽위원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유럽법원에 항소하였다.

금일 선고된 판결에서 유럽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판시하였다.

· 제1심법원은 유럽공동체법원에 주어진 사법심사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유럽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하여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 불완전, 무의미하면서 모순된 것이며, 그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라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경제사안에 관하여 유럽위원회가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공동체법원이 유럽위원회에 의한 경제의 본질에 관

1) 결정 2004/124/EC(OJ2004L43, P.13)

2) "Stretch blow moulding" 기계는 페트병의 제조에 사용된다.

3) Case T-5/02, T-80/02, 2002. 10. 25. 신문발표문 No.87/2002를 참조.

한 정보의 해석, 특히 장래의 분석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심법원은 합병한 Tetra Laval과 Sidel에 의해 지렛대 작용에 관련되는 잠재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채택된다는 것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을 각하했다. 이것은 법률상의 실수이다. 그렇지만 이 실수에 의해 (제1심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 결정의 취소는 장래 행위에 관하여 Tetra Laval이 체결한 약속을 유럽위원회가 고려할 것을 거부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 항소에서 다른 소인(訴因) - 시장의 정의, 종이팩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지위의 강화와 SBM기계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지위의 창출에 관한 사실 및 주장의 오해 - 은 이유가 없거나 또는 제1심법원의 증거 평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하하였다. 항소심소송에서는 법률상의 문제에 한정되어 이와 같은 평가는 항소심소송에서의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5. 2. 15.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 유럽위원회, 독일에서의 휴대전화 국제로밍 요금을 문제시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휴대전화 네

트워크 운영자(MNOs)인 T-Mobile과 Vodafone의 행위가 EC조약에 위반하는 지배적지위의 남용(EC조약 제82조)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양사에 대해 각각 이의고지서를 송부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매단계에서 T-Mobile과 Vodafone이 다른 MNOs에 부과하고 있는 국제로밍서비스 요금이 높은 점을 문제로 하고 있다. 외국의 MNOs는 자사의 가입자가 독일을 방문중에 가입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소위 로밍)에 독일의 T-Mobile과 Vodafone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운영자간 요금(IOTs)을 지불해 오고 있다. IOTs는 MNOs의 가입자로 전화(轉化)된 것 때문에 높은 IOTs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된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6월에도 영국의 운영자인 Vodafone과 O2 2사에 대하여 각각 같은 형태의 이의고지서를 송부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조치는 유럽의 소비자가 EU 역내를 여행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EU 국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의 기술적인 표준을 조정하는 유럽위원회의 조치 덕분이다. 유럽위원회는 휴대전화의 국내통화에 적용되는 저렴한 요금과는 매우 대조적인 높은 로밍요금에 의해 이러한 이점이 사라져버리는 것

을 바라지 않는다.

유럽위원회의 심사에서는 1997년부터 적어도 2003년말까지의 사이, T-Mobile은 자기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도매단계의 국제로밍서비스 제공으로 독일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게 되었다. 이 남용은 유럽의 MNOs에게 불공정하고 과도한 요금을 과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위원회의 심사는 2000년초부터 적어도 2003년말까지 사이, Vodafone이 부과한 IOTs에 관해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2001년 7월에 행해진 심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유럽위원회는 각각의 독일 네트워크가 1997년부터 적어도 2003년말까지 각각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기간에 T-Mobile과 Vodafone은 그들 각자의 네트워크에 관하여 지배적지위를 누렸다. 심사에 의해 로밍서비스는 MNOs에 의해 공급되는 다른 비교가능한 서비스에 비해 수배의 높은 이익을 낳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특히, 로밍으로 인한 통화료는 T-Mobile과 Vodafone이 그들 각각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독일의 독립업자(independent service provider : ISPs)의 가입자에 의한 T-Mobile과 Vodafone의 각각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통화에 과하는 요금에 비해 훨씬 높게 되었다.

T-Mobile과 Vodafone 모두 ISPs

에 대해 네트워크로의 접근 도매판매를 하고 있다. 독일의 ISPs 가입자에게 도매 네트워크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의 MNOs 가입자가 독일에서 로밍을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매 국제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그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2개의 기본적으로 비교가능한 서비스간에 매우 큰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의고지서는 경쟁규정(EC조약 제 82조) 위반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예비적인 입장을 공표하는 것이다. T-Mobile과 Vodafone 모두 현재 유럽위원회의 예비적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 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어떠한 형태로도 예단을 주는 것은 아니다.

2005. 2. 10. 유럽위원회 발표문

## 독 일

### 연방카르텔청, 린병원의 아이젠휘텐슈타트 시립병원 인수를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바트 노이슈타트에 있는 린 병원 주식회사(Rhön Klinikum AG; 이하 린)가 독일 동부의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지방에서

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300석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아이젠휘텐슈타트 시립병원을 인수하려는 것을 금지했다. 린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도적인 시립 병원콘체른이며, 바이에른 은행(Bayerische Hypo- und Verein-bank) 등이 지배하고 있다. 린은 현재 독일에서 3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린은 2004년 여름 이후 총 3,000 병상이 넘는 병원들을 인수한 바 있다. 2005년 3월 10일에도 연방카르텔청이 린에 대해 이번과 유사한 사례에서 병원 인수를 금지한 적이 있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기업결합 계획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지방에서 이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린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린은 이 지역에서 이미 각종 병원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젠휘텐슈타트 근처의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린의 시장점유율은 약 20%가 증가되어 총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이젠휘텐슈타트 시립병원의 입찰경쟁을 통해 경쟁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소유자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은 아직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며, 이해관계자들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05. 3. 29. 연방카르텔청

## 일 본

### 공취위, 동양고무에 대해 동의 심리판결

공정취인위원회는 동양고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에 대해, 지난 1월 31일에 심판개시 결정을 한 이후 심판관을 지정해 심판수속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3월 15일에 피심인이 독점금지법 제53조의3 및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근거해 동의심리판결을 받고 싶은 취지의 신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피심인이 스스로 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해당 구체적 조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공정취인위원회는 3월 31일에 독점금지법 제53조의3에 근거해 심리판결을 했다. 오사카에 위치하며 타이어 제조사업 등을 하고 있는 피심인은 주요 사업자 3사 및 판매업자 6사와 함께 공동으로 2003년 7월 31일 이래, 방위청이 일반경쟁에 불인 항공기용 타이어 이외의 공기주입식 타이어와 튜브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수주 가격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수주 예정자 등을 미리 결정하여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

래제한의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첫째, 피심인은 입찰담합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둘째, 피심인은 입찰담합의 취소 조치 및 앞으로 공동으로 방위청이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는 공기주입식 타이어와 튜브 중 방위청 계약본부가 계약 사무를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 예정자 등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주 활동을 행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사업자 3사와 판매업자 6사 그리고 방위청 계약본부에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에게도 철저히 주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심인은 향후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사의 타이어·튜브의 판매 담당자에게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05. 4. 4. 공정취인위원회

### PS재팬 주식회사 및 대일본인크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폴리스티렌 사업통합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PS재팬 주식회사(이하 PSJ) 및 대일본인크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본인크)로부터 두 회사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폴리스티렌(이하 PS) 사업의 통합(이하

본 건 행위)과 관련하여 사전상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독점금지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당사회사에 있어 본 건 행위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은 「기업결합 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에 대한 대응방침」(2002년 12월 11일)에 근거해, 서면심사에 더하여 상세 심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당사회사의 요구에 의해 상세 심사의 회답 기한을 연장했었다.

PS란 나프타로부터 생성되는 에틸렌 및 벤젠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스티렌 모노머(이하 SM)를 중합해 제조되는 범용 합성수지이다. PS는 일반 성형용의 범용 PS(이하 GPPS)와 GPPS에 고무 성분을 더한 내충격성 PS(이하 HIPS)로 대별된다. PS는 일반적으로 포장용, 발포용, 전기·공업용 및 잡화용의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내 시장에 있어서 각 용도의 구성비는, 포장용이 약 4할이고 그 외의 용도가 각각 약 2할 정도이다.

PSJ 및 대일본인크는, PSJ가 대일본인크로부터 PS사업의 영업을 양수받고 대일본인크는 PSJ에 출자를 하여, 양 회사의 PS 사업을 통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2004년 6월 23일 공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먼저 일정한 거래 분야를 확정

하였다. GPPS 및 HIPS는 대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양자의 기본적인 제조 공정은 동일하며, 각각 제조 설비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는 일 없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자를 합친 PS의 제조·판매 분야에 일정한 거래 분야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있어서는 전국 시장으로서 확정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독점금지법상의 평가를 하였다.

#### (1) 단독 행동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평가

현재의 국내 제조업자는 4사이며, 이들 국내 경쟁업자에게 공급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 수입품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공급면의 문제가 있어 일부 대체할 수 없는 이용자들이 있으며, 아시아 시장의 수급이 넉넉지 못하여 수출국에 공급 여력이 없는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신규 참가 및 인접 시장으로부터의 충분한 경쟁 압력이 없다는 점, 이러한 것들에 의해 이용자들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용자측에 충분한 가격 교섭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에서, 본 건 행위에 의해 당사회사의 국내 판매수량 점유율이 약 50%가 되어 하위 사업자 2사와의 격차가 커져서, 당사회



사의 가격인상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견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PS의 가격 등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좌우할 수 있는 상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2) 협조적 행동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평가

수입품, 신규 참가 및 인접 시장으로부터의 충분한 경쟁 압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고도로 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각사는 서로 생산능력을 쉽게 파악하는 상황에 있음과 동시에, 생산비용으로 차지하는 공통의 원재료의 비율이 크고, 비용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업자가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내 시장 상황에서, 본 건 행위에 의해 원재료의 조달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 경쟁업자가 1개사가 감소함으로써, 한층 더 고도로 과점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 당사회사와 그 경쟁업자가 협조적 행동을 통해 PS의 가격 등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좌우할 수 있는 상태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당사회사에 대해 본 건 행위에 의해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경쟁업자와 협조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렸다. 이에 당사회사는 공정취인위원회

회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문제 해소 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건 행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05. 4. 1. 공정취인위원회

## 벨소리 제공업자에 대해 권고 조치

공정취인위원회는 레코드 제작사인 소니 뮤직과 그 자회사로서 벨소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5사(이하 5사)가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항제1호(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권고조치 했다. 벨소리란 원반에 녹음된 연주자의 노래 등의 일부를 휴대전화의 착신음으로서 설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사는 벨소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라벨 모바일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으로 자신들 이외에 라벨 모바일 주식회사에 벨소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자(이하 다른 벨소리 제공업자)에 대해서는 원반권의 이용 허락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거절했다.

라벨 모바일 주식회사는 5사 등 레코드 제작회사가 보유하는 음악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위한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5사 등 벨소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레코드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벨소리 제공업무를 수탁하고 있다.

그리고 원반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원반의 제작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반에 녹음된 연주자의 노래 등을 송신이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말하며, 원반권을 소유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벨소리를 제공하려면 원반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원반권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5사에 대해 공동으로 다른 벨소리 제공업자에게 원반권의 이용 허락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를 취소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사가 각각 독자적으로 원반권의 이용 허락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자사를 제외한 4사 및 라벨 모바일 주식회사에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 및 다른 벨소리 제공업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5사는 향후 각각 독자적으로 원반권의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반권의 이용 허락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에게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 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리판결을 하며, 이를 승낙하지 않을 때는 심판수속을 개시하게 된다.

2005. 3. 24. 공정취인위원회